#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05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황정아·조인철·정동영

박민규 • 이훈기 • 김우영

최민희 • 노종면 • 이정헌

한민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등의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 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 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제10호의2,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9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도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제1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진흥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 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사장후보추천위 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4(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 등)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임원) ①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u>9명</u>	<u>15명</u>
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	
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4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가</u> 임	<u>다음 각 호에 따라</u>
명한다.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u>가</u>
<u>&lt;신 설&gt;</u>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
	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u>&lt;신 설&gt;</u>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
	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

<신 설>

<신 설>

<신 설>

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지역
 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
 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
 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시청자위원회도 포함한 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 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 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 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 ⑤ · ⑥ (생 략)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 ④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⑤ • ⑥ (생 략)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제10조(이사회의 기능)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다만. 제 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 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의3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 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 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 사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 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 결한다.

1. ~ 10. (생략) <신 설>

11. (생략)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11. (현행과 같음)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진흥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 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 다.

제10조의3(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와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 다.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 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 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 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0조의4(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신 설>

-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 등)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